true friend 한국투자 신탁운용

장기투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투자신탁명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자산운용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전화번호	■증권 판매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1566-0900, www.bridgefn.co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교보증권 (☎ (02)3771-9000 , www.iprovest.com)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굿모닝신한증권 (☎ (02)3772-1000, www.goodi.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대신증권 (☎ (02)769-2000, www.daishin.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우증권 (☎ 1588-3322, www.bestez.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동부증권 (☎(02)369-3000, www.winnet.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동양종합금융증권 (☎ (02)3770-2000, www.myasset.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리딩투자증권 (☎ (02)2009-7000, www.leadingkorea.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6-1 메리츠증권 (☎ (02)785-6611, www.imeritz.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미래에셋증권 (☎(02)3774-1700, www.miraeasset.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부국증권 (☎1588-7744, www.bookook.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삼성증권 (☎1588-2323, ww.samsungf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솔로몬투자증권 (☎(02)3770-9200, www.kgieworld.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신영증권 (☎ (02)780-7000, www.shinyoung.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우리투자증권 (☎1544-0000, www.wooriwm.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유진투자증권 (☎ (02)368-6114 , www.seoulstock.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유화증권 (☎ (02)566-5522, www.yhs.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이트레이드증권 (☎1588-2428, www.etrade.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빌딩 키움증권 (☎1544-9000, www.kiwoom.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토러스투자증권(☎ (02)709-2300, www.taurus.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이투자증권 (☎1588-7171,www.hi-ib.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한양증권 (☎ (02)785-2211, www.hygood.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한화증권 (☎ (02)3772-7000, www.koreastock.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현대증권 (☎ (02)2003-1114, www.youfirst.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한국투자증권 (☎1544-5000, www.truefriend.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1 HMC투자증권 (☎ 1588-6655, www.hmcib.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KB투자증권 (☎(02)3777-8000, www.kbsec.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LIG투자증권 (☎1544-7600, www.ligstock.com),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5-11 NH투자증권 (☎ (02)2004-4114, www.nhis.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891 SK증권 (☎ (02)3773-8245, www.webtrade.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은행 판매회사 국민은행 (☎1588-9999, www.kbstar.com),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경남은행 (☎1588-8585, www.knbank.co.kr), 경상남도 마산시 석정동 246-1 광주은행 (☎1588-3388, www.kjbank.com),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02)397-5114, www.nonghyup.com),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 대구은행 (☎1588-5050, www.dgb.co.kr),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번지 부산은행 (☎1588-6200, www.pusanbank.co.kr),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3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588-1515,www.suhyup-bank.com),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11-6 신한은행 (☎1544-8000, www.shinhan.com),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우리은행 (☎ (02)2008-5000, www.wooribank.com),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중소기업은행 (☎1566-2566, www.kiupbank.co.kr),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50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제주은행 (☎1588-0079, www.e-jejubank.com),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349번지 하나은행 (☎1588-1111, www.hanabank.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한국외환은행 (☎1544-3000, www.keb.co.kr),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1588-1599, www.scfirstbank.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 HSBC은행 (☎1588-1770, www.kr.hsbc.com),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기타 판매회사 교보생명 (☎(02)721-2121, www.kyobo.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금호생명보험 (☎1588-4040, www.kumholife.co.kr),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 금호 아시아나1관 대한생명 (☎1588-6363, www.korealife.com),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60 대한생명 63빌딩 메리츠종합금융 (☎(02)777-7711, www.imeritzbank.com),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588-9600, www.metlife.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 삼성생명보험 (☎1588-3114, www.samsunglife.com),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 ING생명보험 (☎1588-5005, www.inglife.co.kr),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53 현대해상화재보험 (☎1588-5656, www.hi.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작성기준일	2009년 2월 23일
투자설명서 비치 · 공시장소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 · 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tmc.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평균 수익률, 연도별 수익률 추이)
3. **수수료 · 보수, 과세**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 및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 펀드 용어 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Ⅰ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6쪽)

1. 명 칭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종류A: 53211, 종류C:69572, 종류C-e: 75336, 종류C-W: 78869, 종류C-F: 89233)
2. 펀드존속기간 :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 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추가형·개방형·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Ⅱ 투자정보(☞본문 7~10쪽)

구 분	주 요 내 용
1. 투자목적	-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 * 비교지수: [(KOSPI × 90%) + (CD금리 × 10%)] ☞ 한국투자신탁운용 홈페이지(www.kitmc.com)에서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률 확인 가능
2. 주요 투자전략	- 매출성장률, EPS(주당순이익)성장률이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주식을 발굴하여 자산배분을 배제하고 Bottom-up approach 방식으로 투자
3. 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채권의 이자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간접투자기구(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kitmc.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2008.06.02.기준]

성명	나이	직위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운용경력
박현준	34세	운용역	21개	12,345억원	- 주식운용4년 - 채권운용4년

7.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이 실적은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단위:%]

연도	최근1년 (07.11.08 ~08.11.07)	최근2년 (06.11.08 ~08.11.07)	설정일 이후 (종류A: 05.12.20 ~08.11.07) (종류C: 07.05.29 ~08.11.07) (종류C-e: 07.10.26 ~08.11.07)
투자신탁(종류A)	-44.73	0.07	-0.17
비교지수*(종류A)	-40.43	-7.81	-4.22
투자신탁(종류C)	-45.13	-	-15.77
비교지수*(종류C)	-40.43	-	-19.54
투자신탁(종류C-e)	-44.90	-	-40.08
비교지수*(종류C-e)	-34.60	-	-32.43

* 비교지수 = [(KOSPI × 90%) + (CD금리 × 10%)]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10~14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종 류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종류 C-W	종류 C-F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일임형 랩	간접투자기구등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1)		납입금액의 1%	없음			
	환매수수료1)	90일미만	없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및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6560%	연 0.6560%	연 0.6560%	연 0.6560%	연 0.6560%
		판매회사보수	연 1.1000%	연 1.8000%	연 1.5300%	없음	연 0.0300%
		기타보수	연 0.0440%	연 0.0440%	연 0.0440%	연 0.0440%	연 0.0440%
		보수합계	연 1.8000%	연 2.5000%	연 2.2300%	연 0.7000%	연 0.7300%
	기타비용 2)		연 1.3395%	연 1.3395%	연 1.3395%	연 1.3395%	연 1.3395%
	총보수·비용비율 3)		**연 3.1395%**	**연 3.8395%**	**연 3.5695%**	**연 2.0395%**	**연 2.0695%**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2009.02.23.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다만, 거주자로서 2009.12.31일까지 3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적립식 투자를 계약한 경우
- 비과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비과세포함)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1년차: 20%, 2년차 : 10%, 3년차 : 5%) ☞ 세부사항은 본문참조

3. 매입·환매절차 : 이 수익증권의 매입·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에만 가능

구 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 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 D+1 자금납입 (3시 이전) → 수익증권 매입 (D+1기준가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 D+1 → D+2 자금납입 (3시 경과후) → 수익증권 매입 (D+2기준가적용)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D → D+1 → D+2 → D+3 환매청구 (3시 이전) → 기준가격 적용 →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D → D+1 → D+2 → D+3 환매청구 (3시 경과후) → 기준가격 적용 → 환매대금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투자설명서 본문 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점포명)_____(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은)는 (고객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____. ____. 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_____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1.명칭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종류A: 53211, 종류C: 69572, 종류C-e: 75336, 종류C-W: 78869, 종류C-F: 89233)

2.펀드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분류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증권투자신탁, 주식형·추가형·개방형·종류형

※ 당해 종류형투자신탁의 구조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Portfolio (운용)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C-F 수익증권
판매기준 : 제한없음	판매기준 : 제한없음	판매기준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기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판매기준: (1)간접투자기구 (2)기관투자자, 기금 (3)100억 이상 개인, 500억 이상 법인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선취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4.자산운용회사

한국투자신탁운용㈜

5.최초설정일 등 연혁

- 2005년 12월 20일 : 최초설정일
- 2007년 05월 25일 : 투자신탁명칭 변경
  - ○ 변경전 : 한국 부자아빠 성장A 주식증권투자신탁 K-1호
  - ○ 변경후 : 한국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 2007년 05월 25일 :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종류A 수익증권 및 종류C 수익증권으로 종류화]
- 2007년 10월 24일 : 종류C-e 수익증권 신설
- 2008년 01월 25일 : 종류C-W 수익증권 신설
- 2008년 08월 25일 : 투자신탁명칭 변경
  - ○ 변경전 : 한국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 ○ 변경후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 2008년 11월 18일 : 종류C-F 수익증권 신설
- 2009년 02월 23일 :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 총 좌수 변경[1조좌 ⇒ 10조좌]

6.수탁고 추이

별첨 참조

7.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Ⅱ. 투자정보

1.투자목적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고, 채권 및 어음 등에의 투자를 통하여 추가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기대합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 90%) + (CD금리 × 10%)]

☞ 한국투자신탁운용 홈페이지(www.kitmc.com)에서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률이란 전월 초 비교지수 대비 전 월말 비교지수의 증감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투자자는 동 펀드의 전 월말 기준 수익률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변동률을 비교함으로써 매입하신 펀드가 비교지수에 비해 잘 운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주요투자전략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며, 채권 등에의 투자는 40%이하로 투자·운용할 예정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의 투자는 60%이상, 채권 등에의 투자는 40%이하로 투자·운용하는 주식형투자신탁입니다. 주식부문에서는 매출성장율이나 EPS(주당순이익)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주식을 발굴하여 일체의 자산배분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Bottom-up approach 방식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채권부문에서는 국고채, 통안채 위주로 주로 투자·운용하되 신용평가등급 A-이상인 회사채에도 선별적으로 투자·운용할 계획입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 및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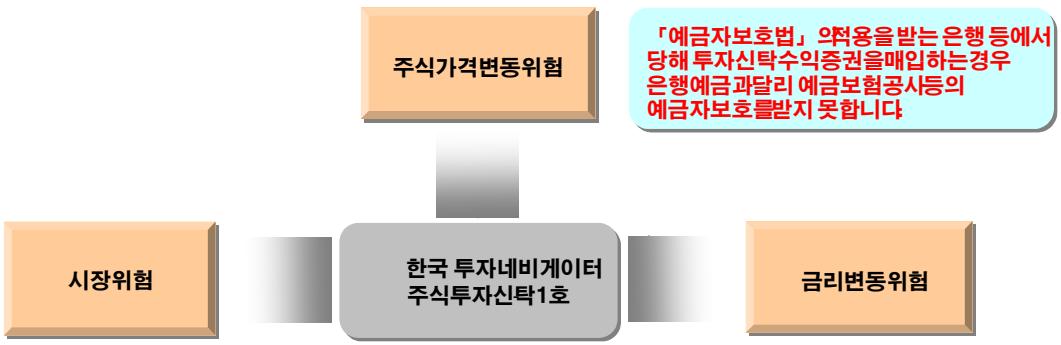

(1) 주식가격변동위험

- 당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시장위험

-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3) 금리변동위험

-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환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가격의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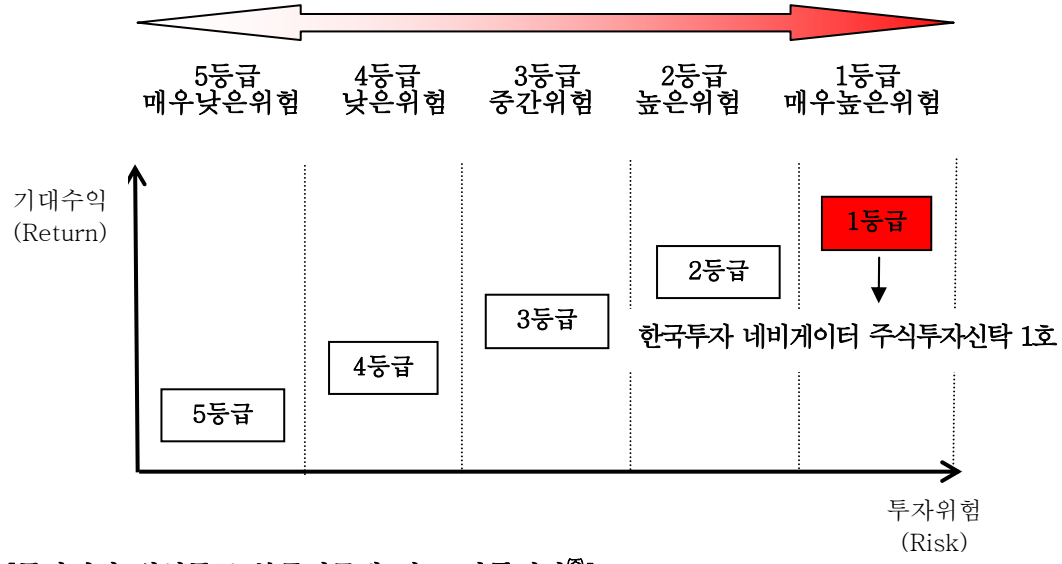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상품예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한국 월드와이드 그레이터차이나 주식투자신탁 1호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2등급	높은위험	- 한국 부자아빠 성장A 주식혼합증권투자신탁 K-1호 - 한국 노블 월지급식 연속분할매매 주식혼합투자신탁 1호
3등급	중간위험	- 한국 월드와이드 미리미리 채권혼합투자신탁 1호 - 한국 패스파인더A 채권혼합투자신탁 1호
4등급	낮은위험	- 한국 부자아빠 마스터 중기 채권증권투자신탁 A-1호

		- 한국 부자아빠 회사채 채권증권투자신탁 A-1호
5등급	매우낮은 위험	- 한국 부자아빠 마스터 중기 국공채증권투자신탁 A-1호 - 신종 MMF 1-M호

(주) 상기 예시는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 내부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예시입니다. 따라서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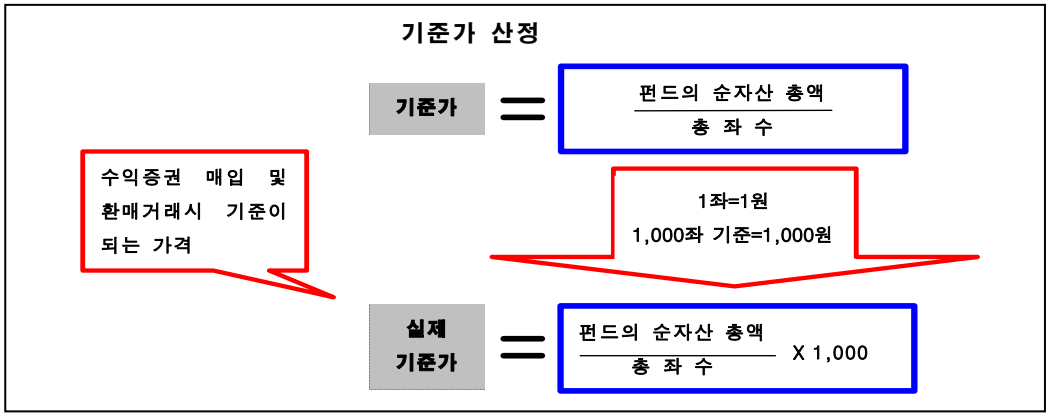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당해 투자신탁은 법 제138조에 의거하여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자산운용회사(www.kitmc.com)· 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6.운용전문인력

성 명	나 이	소속부서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박현준	34세 (1974.06.24)	주식운용2팀	운용역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졸 -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4년 - K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3년 - 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 - CFA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Ⅰ.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

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투자실적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연평균수익률

- 별첨 참조

나.연도별수익률 추이

- 별첨 참조

Ⅲ. 수수료 · 보수, 과세

1.수익자가 직접부담하는 수수료

구 분	부담비율(주)		비고 (부담시기)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C-F 수익증권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없음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없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1회

(주) 종류A 수익증권 및 종류C 수익증권은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종류C-e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게만 판매하고, 종류C-W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판매합니다. 또한 종류C-F 수익증권은 (1)간접투자기구(FOFs), (2)기관투자자,기금, (3)100억 이상 개인, 500억 이상 법인에 한하여 판매됩니다.
(다만, 종류C 수익증권 및 종류C-e 수익증권의 경우 판매보수가 종류A 수익증권보다 더 높고, 종류 C-F 수익증권의 경우 판매보수가 종류A 수익증권보다 낮으며, 종류C-W 수익증권의 경우 판매보수가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담비율(순자산총액의 %)(연간)					비고 (부담시기)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C-W 수익증권	종류C-F 수익증권	
자산운용회사 보수	0.6560%	0.6560%	0.6560%	0.6560%	0.656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1.1000%	1.8000%	1.5300%	없음	0.0300%	
수탁회사 보수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40%	0.0140%	0.0140%	0.0140%	0.0140%	
기타비용(주1)	1.3395%	1.3395%	1.3395%	1.3395%	1.3395%	사유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 비율(주2)	**3.1395%**	**3.8395%**	**3.5695%**	**2.0395%**	**2.0695%**	-

(주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종류 A 수익증권의 직전 회계년도[직전회계년도:2006.12.20~2007.12.19]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천원)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수익증권	413	1,089	1,834	4,048
종류 C 수익증권	384	1,210	2,122	4,829
종류 C-e 수익증권	357	1,125	1,972	4,490
종류 C-W 수익증권	204	643	1,127	2,565
종류 C-F 수익증권	207	652	1,144	2,603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기간별 투자자 부담 비용 추이[수익증권 종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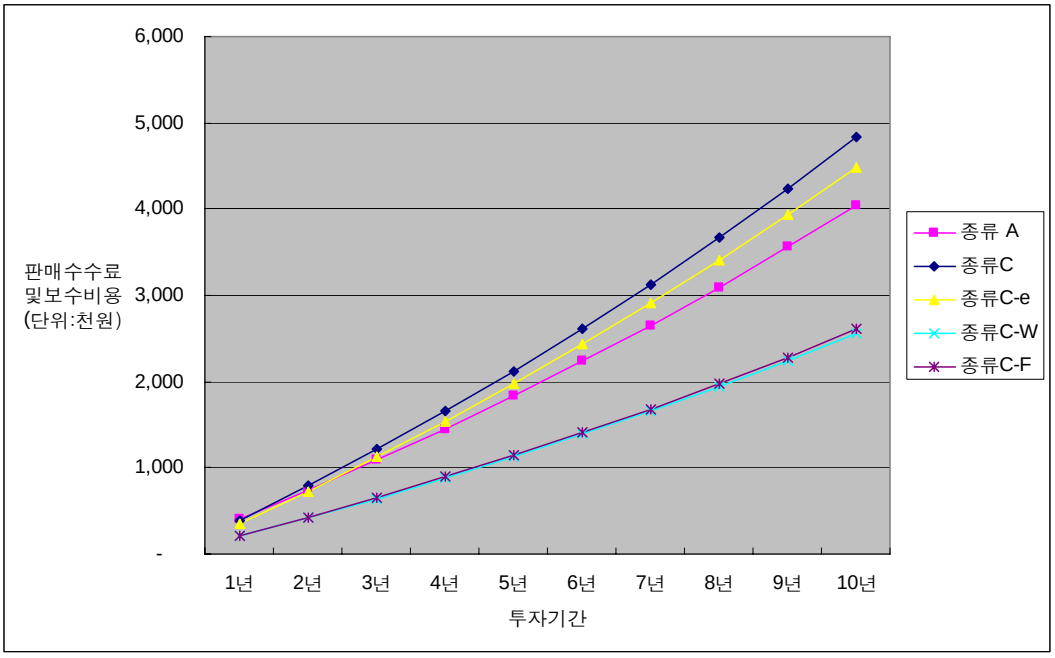

3.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

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의 세제우대 : 배당소득(농특세 포함) 비과세 및 소득공제

-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3년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의 불입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계약한 거주자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하며,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 : 기존 적립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신규 가입자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금융기관의 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대상 금액
     가. 1차년분 : 해당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차년분 : 해당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차년분 : 해당기간 중 불입액의 5%

☞ 소득공제 예시 : 투자자 A가 2009.7.1일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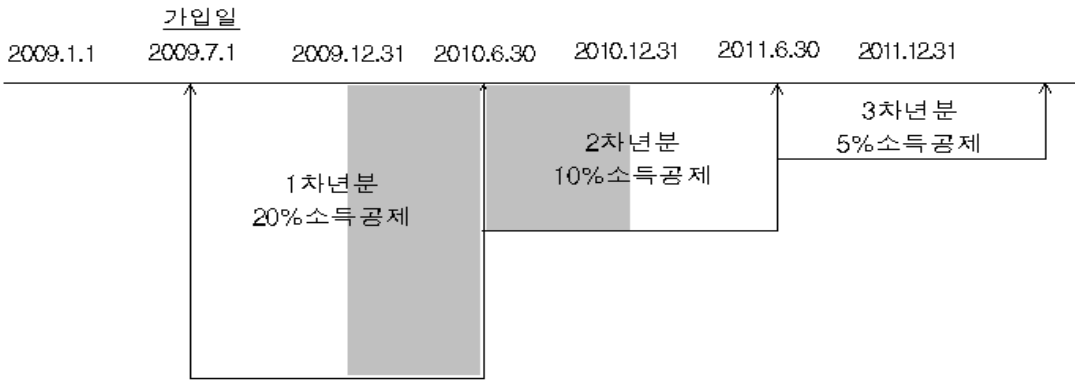

Ⅳ.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분배

1.매입

(1)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선취판매수수료

- 수익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종류 구분	판매기준	선취판매수수료
종류 A 수익증권	제한없음	1.0%
종류 C 수익증권	제한없음	없음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종류 C-F 수익증권	(1)간접투자기구(FOFs) (2)기관투자자, 기금 (3)100 억 이상 개인, 500 억 이상 법인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오후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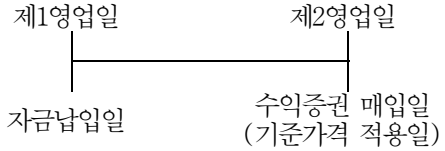

(나)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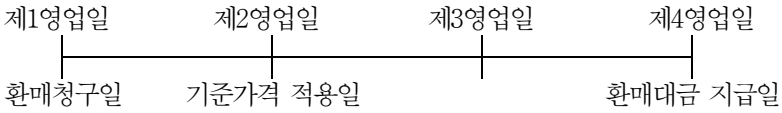

(나)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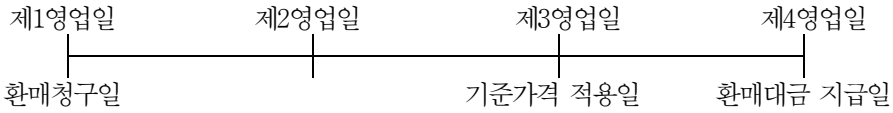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환매제한, 환매연기, 부분환매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담비율		비고 (부담시기)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C-F수익증권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이익등의 분배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운용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입니다.

■ 주식부문의 투자전략

매출성장율이나 EPS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업 등 중에서 종목을 선택하여 일체의 자산배분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Bottom Up Approach 방식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Buy&Hold 전략을 구사하여 목표가격 도달 시 종목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 채권부문의 투자전략

국고채, 통안증권 위주로 주로 투자·운용하되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회사채에도 선별적으로 투자·운용할 계획입니다.

2.투자위험

(1)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기업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레버리지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투자대상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주식	60%이상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함**
채권	40%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함)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이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 또는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수익증권등	5%이하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 법1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증권의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이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이하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약관 제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이해관계인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2조 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 이라 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주식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격을 기초로 한 가격
상장·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법 제140조에 따른 모자형간접투자기구의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제공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제공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부동산	가.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 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하는 가액

-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곤란하여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 기준가 산출 시점 현재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서 외국의 최종시가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외화 표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가. 투자증권 거래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주식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격월 주식운용역, 스트래트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 중개회사 지정
채권등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도모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분기 채권운용역, 스트래트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 내에서 중개회사 지정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주식관련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격월 주식운용역, 스트래트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기여도 평가 점수에 따라 중개회사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중개회사 지정
채권관련등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도모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분기 채권운용역, 스트래트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 내에서 중개회사 지정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매입관련 유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2.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는 신탁약관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분배관련 유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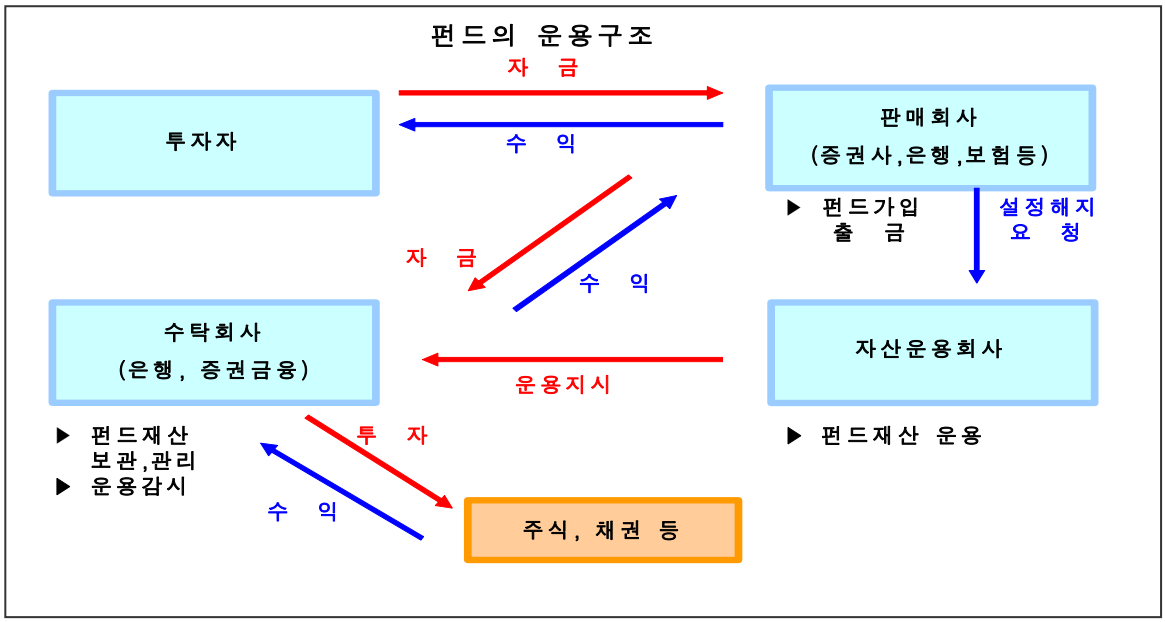

Ⅰ. 자산운용회사

1.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02-3276-4700)
회사연혁	- 1974. 7.16 : 한국투자신탁 설립 - 2000. 6. 4 : 한국투자신탁 증권사 전환 - 2000. 6.28 : 한국투자신탁운용사 설립 - 2005. 4. 1 : 동원금융지주그룹 편입 (상호변경:한국투자금융지주) - 2005. 7. 4 : 동원투자신탁운용㈜를 흡수합병

2.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최근 2개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제7기 (2008.3.31)	제6기 (2007.3.31)	항목	제7기 (2007.4.1~ 2008.3.31)	제6기 (2006.4.1~ 2007.3.31)
고정자산	7,711	6,620	영업수익	65,445	45,095
유동자산	101,368	85,044	영업비용	28,989	21,356
자산총계	109,079	91,664	영업이익	36,456	23,739
고정부채	83	234	영업외수익	79	54
유동부채	12,709	7,090	영업외비용	213	1,107
부채총계	12,793	7,324	경상이익	36,323	22,686
자본금	66,000	66,000	특별손익	-	-
자본잉여금	788	788	세전순이익	36,323	22,686
이익잉여금	29,342	17,546	당기순이익	26,316	16,172
자본조정	155	6			
자본총계	96,285	84,340			

4.운용자산규모

[2008년 7월 24일 기준 자산운용협회 공시자료]

(단위:억원)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 자산	합 계
수탁고	83,627	26,897	33,962	41,556	7,869	2,496	5,231	8,054	209,693

[유형별 운용자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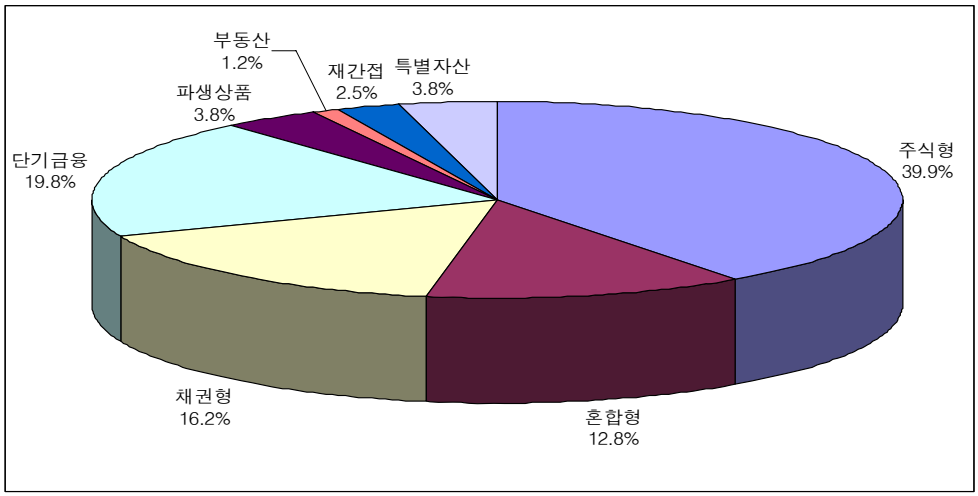

5.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성 명	나 이	직 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박현준	34세 (1974.06.24)	운용역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졸 -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4년 - K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3년 - 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 - CFA

운용현황 [2008.06.02. 기준]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21개	12345 억원

※ 당해 운용전문인력 기타사항 [2008.06.02. 기준]

○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일임계약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은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Ⅱ. 판매회사

1.회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1566-0900)
	연혁	- 1954.08.30 : 회사설립 - 2005.09.30 : 골드브릿지금융 그룹에 편입 - 2007.10.01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상호변경
	홈페이지	www.bridgefn.com
교보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02-3771-9000)
	연혁	- 1949.11.22 회사설립 (구 대한증권) - 1994.04.01 교보증권으로 상호 변경 - 1999.11.18 코스닥 시장등록 - 2004.11.22 창립 55주년
	홈페이지	www.iprovest.com

굿모닝신한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02-3772-1000)
	연혁	- 1984.4 쌍용투자증권 설립 - 1983.5 국내증권사 최초 외국에서의 증권업무 인가 - 1999.5 굿모닝증권으로 상호 변경 - 2002.8 굿모닝신한증권 출범
	홈페이지	www.goodi.com
대신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02-769-2000)
	연혁	- 설립일자 : 1962년 7월 27일 - 1999년 3월 1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매회사 등록
	홈페이지	www.daishin.co.kr
대우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1588-3322)
	연혁	- 2004.05.01 : 홍콩 Asiamoney지 "주식부문 한국 최우수 증권사" 선정 - 2003.09.23 : 대우증권 창립 32주년 - 1983.12.22 : 삼보증권㈜ 흡수합병 - 1983.10.24 : 상호변경(대우증권주식회사) - 1970.09.23 : 동양증권㈜ 설립
	홈페이지	www.bestez.com
동부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02-369-3000)
	연혁	- 1982.12.20 : 국민투자금융 설립 - 1988.09.01 : 동부투자금융(주)로 상호변경 - 1991.06.01 : 증권업 전환
	홈페이지	www.winnet.co.kr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02-3770-2000)
	연혁	- 1962.06월 : 회사설립 - 2001.11월 : 동양증권-동양현대종금 합병, 동양종합금융증권㈜ 출범
	홈페이지	www.myasset.com
리딩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6-1 한솔빌딩 12층 (02-2009-7000)
	연혁	- 2000.3.17 주식회사 설립 - 2000.4.14 증권업인가 취득 - 2000.9.08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모집 및 판매업무 인허가 취득
	홈페이지	www.leadingkorea.com
메리츠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02-785-6611)
	연혁	- 1973.02 : 한일증권주식회사 설립 - 1990.10 : 한진투자증권㈜로 상호 변경 - 1992.01 :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 2000.03 : 메리츠증권으로 사명 변경 - 2000.04 : 한진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 - 2000.08 : 메리츠투자자문 자문 취득 - 2001.08 : 투자자문업 허가 취득 - 2003.11 : 투자일임업 허가 취득
	홈페이지	www.imeritz.com
미래에셋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02-3774-1700)
	연혁	- 설립일자 : 1999.12.2 - 판매회사등록일 : 2000.1.13 - 자본금 : 1,128억 - 종업원수 : 698명(05.04.30 현재) - 매출액 : 2,939억(05.03월 기준)
	홈페이지	www.miraeasset.com

부국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1588-7744)
	연혁	- 1954.08.25 : 창립 - 1997.05.31 : 수익증권 매매업무 인가
	홈페이지	www.bookook.co.kr
솔로몬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02-3770-9200)
	연혁	- 1982.12 회사설립 - 1984.02 조흥은행 대주주로 참여 - 2000.01 KGI 대주주로 참여 - 2008.02 솔로몬투자증권(주)로 상호변경
	홈페이지	www.kgieworld.co.kr
삼성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빌딩 (1588-2323)
	연혁	- 1992.11.25 삼성증권 출범 - 1996.11.12 수익증권 위탁판매 실시 - 1999.02.10 IMF이후 증권업계 최초신용평가 A등급 회복(한국신용평가) - 2000.12.01 삼성투자신탁증권과 합병
	홈페이지	www.samsungfn.com
신영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02-780-7000)
	연혁	- 1956.2.25 신영증권 주식회사 설립 (설립자본금 3천만원) - 1985.5.20 신영증권 본사 현 여의도 사옥으로 이전 - 1999.5월 금감원으로부터5년연속최우수증권사지정 - 2005.3월 34년 연속 흑자 달성
	홈페이지	www.shinyoung.com
우리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1544-0000)
	연혁	- 2004.05월 :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 - 2004.12월 : 우리금융그룹 계열회사로 편입 - 2005.04월 : 우리투자증권 출범
	홈페이지	www.wooriwm.com
유진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02-368-6114)
	연혁	- 1954.05.12 : 설립 - 2008.01.01 : "유진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
	홈페이지	www.eugenefn.com
유화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02-566-5522)
	연혁	- 1962.06.02 : 창립 - 1987.08.24 : 주식상장 - 1998.10.01 : 자산재평가 실시 - 2004.3월말 현재 : 자기자본 3,268억원
	홈페이지	www.yhs.co.kr
이트레이드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빌딩 (1588-2428)
	연혁	- 1999.12.15 법인 설립 - 2001.03.02 투자신탁상품 온라인 판매개시 - 2004.06.10 외국계합작증권사로 전환 - 2004.11.26 인수업 허가 취득, 종합증권사로 승격
	홈페이지	www.etrade.co.kr
키움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번지 (1544-9000)
	연혁	- 2000.01.31 키움닷컴증권 설립

		- 2000.05.04 영업개시 - 2000.07.28 온라인증권사 최초 공모주 청약 실시 - 2000.12.12 온라인증권사 최초 주간사 업무 실시 - 2001.03.15 신임 김봉수 대표이사 선임 - 2001.06.13 증권업계 최초 사모 M&A펀드 판매 - 2003.10.29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자회사 편입 - 2003.12.04 中國 강남증권과 MOU 체결 - 2004.04.23 기업공개 (코스닥시장 등록) - 2004.10.11 수익증권판매업무 실시
	홈페이지	www.kiwoom.com
토러스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3층(02-709-2300)
	연혁	- 2008.05.16 설립 - 2008.07.25 증권회사 설립 인가(금융감독위원회) 설립자본금: 300억원
	홈페이지	www.taurus.co.kr
하이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하이투자증권빌딩 (1588-7171)
	연혁	- 설립일자 : 1989년 10월 30일 - 1999년 1월 21일 판매회사등록
	홈페이지	www.hi-ib.com
한양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02-785-2211)
	연혁	- 설립일자 : 1956년 3월 27일
	홈페이지	www.hygood.co.kr
한화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02-3772-7000)
	연혁	- 설립일자 : 1962년 7월 19일
	홈페이지	www.koreastock.co.kr
현대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02-2003-1114)
	연혁	- 설립일자 : 1962년 6월 1일 - 1996년 7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매회사 등록
	홈페이지	www.youfirst.co.kr
한국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1544-0012)
	연혁	- 1974.07.16 : 설립 (자본금 5억원) - 1977.04.11 : 신탁형증권저축업무 개시 - 2000.06.04: 종합증권사로 전환(한국투자신탁증권) - 2000.06.28 : 한국투자신탁운용 설립 - 2005.03.31 : 동원금융지주 계열회사 편입 - 2005.06.01 : 한국투자증권과 동원증권 통합
	홈페이지	www.truefriend.com
HMC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1588-6655)
	연혁	- 1955.07.26 회사 설립 (설립자본금 2백만원) - 1997.01.11 외국투자신탁증권 국내판매 대행업무 겸영 인가 - 1997.02.14 증권회사외국환업무지정기관 지정인가
	홈페이지	www.hmcib.com
KB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21,22층 (02-3777-8000)
	연혁	- 1995.07.12 합작증권사 설립을 위한 내허가 취득 - 1995.11.17 한누리살로먼증권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1997.01.11 외국투자신탁증권 국내판매 대행업무 경

		영인가 취득 - 1997.10.10 한누리투자증권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2008.3.31 KB투자증권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홈페이지	www.hannuri.com
LIG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한진해운 빌딩 3층 (1544-7600)
	연혁	- 2008.06.17 : 법인 설립(자본금 800억원) - 2008.07.30 : LIG투자증권(주)영업개시
	홈페이지	www.ligstock.com
NH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891 (02-2004-4114)
	연혁	- 1982.12 고려투자금융㈜영업개시 - 1991.07 사명변경 : 고려투자금융㈜ → 동아증권㈜ - 1998.10 사명변경 : 동아증권㈜ → 세종증권㈜ - 2006.02 사명변경 : 세종증권㈜ → NH투자증권㈜
	홈페이지	www.nhis.co.kr
SK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02-3773-8245)
	연혁	- 설립일자 : 1955년 7월 30일
	홈페이지	www.webtrade.co.kr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1588-9999)
	연혁	- 설립일자 : 2001년 11월 1일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합병)
	홈페이지	www.kbstar.com
경남은행	주소 및 연락처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정동 246-1 (1588-8585)
	연혁	- 1968.12.24 반기설립 - 1970.04.15 창립총회 - 1970.04.18 설립등기 - 2000.12.31 예금보험공사출자에 의한 자본금 2,589억 5천만원 증자 - 2003.05.30 총수신 9조원 달성
	홈페이지	www.knbank.co.kr
광주은행	주소 및 연락처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1588-3388)
	연혁	- 1968.09.17 창립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 2001.03.27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02.09.03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록 - 2003.01.01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주식회사와 IT아웃소싱 - 2003.10.08 Fitch Rating社(국제신용평가사) 신용평가 결과 투자적격(BBB-)등급 획득
	홈페이지	www.kjbank.com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 (02-397-5114)
	연혁	- 설립일자 : 1961년 8월 15일 - 납입자본금 : 3조 615억원 (2004.6.25일기준)
	홈페이지	www.nonghyup.com
대구은행	주소 및 연락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번지 (1588-5050)
	연혁	- 1967.10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 - 2002.05 납입자본금 금 6,606억원 (수권자본금 15,000억원) - 2002.08 금융감독원 전국은행 민원평가 1위 수상 - 2003.10 경영혁신대상수상 (한국품질경영학회,포브스코리아주관)

	홈페이지	www.dgb.co.kr
부산은행	주소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38 (1588-6200)
	연혁	- 설립일자 : 1967.10.10
	홈페이지	- www.pusanbank.co.kr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6 (1588-1515)
	연혁	- 설립일자 : 1962년 1월 20일
	홈페이지	www.suhyup-bank.com
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1544-8000)
	연혁	- 1897.02 한성은행 출범 - 1982.07 신한은행 창립 - 2001.09 신한금융지주회사 출범 - 2003.09 조흥은행 신한지주 인수 - 2003.09 신한지주 뉴욕증시 상장 - 2006.04 신한은행 조흥은행 합병
	홈페이지	www.shinhan.com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02-2008-5000)
	연혁	- 2001. 4. 2 : 우리금융 출범 - 2002.11.10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선정 - 2004.11.29 :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홈페이지	- www.wooribank.com
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50 (1566-2566)
	연혁	- 1961년08월 중소기업은행 설립 - 1968년04월 신탁업무 취급개시 - 2002년02월 수익증권 위탁판매업무 실시
	홈페이지	- www.kiupbank.co.kr
전북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1588-4477)
	연혁	- 1969.12 주식회사 전북은행 창립 - 1998.08 신종합시스템 국내은행 최초ISO9001인증 - 2000.01 금융기관 최초로 다산금융상 은행부문 대상 수상 - 2001.03 제9대 홍성주 은행장 취임 - 2004.12 Moody's 신용평가 실시 / 투자적격 (Baa3)
	홈페이지	www.jbbank.co.kr
제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349번지 (1588-0079)
	연혁	- 1969.09.19 제주은행 창립 - 2002.05.10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 - 2005.02.21 적립식펀드 판매 개시
	홈페이지	www.e-jejubank.com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1588-1111)
	연혁	- 1959.12.01 회사설립 - 1999.07.20 판매회사 등록
	홈페이지	www.hanabank.com
한국외환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1544-3000)
	연혁	- 1967년 1월 창립(자본금 100억원) - 1985년 3월 신탁업무 개시 - 1985년 7월 자본금 4,050억원으로 증자 - 1989년 12월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로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 - 2004년 1월 글로벌파이낸스지 한국내 최우수 외국환은행으로 선정

	홈페이지	www.keb.co.kr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제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 (02-3771-9000)
	연혁	- 1929.07월 : 조선저축은행으로 창립 (자본금 5천원) - 1958.12월 : 제일은행으로 행명 변경 - 1987.10월 : 본점건물 신축 이전 - 2005.04월 : Standard Chartered, 제일은행 주식 인수(지분율 100%) - 2005.09월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상호 변경
	홈페이지	www.scfirstbank.com
HSBC 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2004-0000)
	연혁	- 1982년: 부산지점 설립 및 영업 개시 - 1984 년: 서울지점 설립 - 1986 년: Marine Midland Bank 서울 지점 인수 - 1988 년: Midland Bank 서울지점 인수 - 1998 년: 개인금융 업무 시작, - 2000 년: 개인금융 서울지점 개설 - 2005년: 서울, 삼성, 인천, 부산 기업금융센터 (Commercial Banking Centre) 개설 - 2007년: 강남 기업금융센터 개설
	홈페이지	www.kr.hsbc.com
교보생명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02-721-2121)
	연혁	- 1958.8.7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현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창립 - 1994.4.1「대한증권주식회사」를 인수하여「교보증권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1995.4.3「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를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2003.11.19「고객만족경영 대상(4년연속)」수상 - 2004.5.13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등록
	홈페이지	www.kyobo.co.kr
금호생명보험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 금호 아시아나 1관 (1588-4040)
	연혁	1988.04.01 : 금호생명 창립 2000.12.20 : 본사사옥 이전 (신문로 현 금호아시아나 빌딩) 2007.10.22 : 산업자원부 주관 한국서비스품질(SQ) 우수기업 인증 획득
	홈페이지	www.kumholife.co.kr
대한생명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한생명 63빌딩 (1588-6363)
	연혁	- 1946.09.09 :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로 출범 - 1986.12.31 : 총자산 1조 달성 - 2002.12.12 : 한화그룹으로 편입
	홈페이지	www.korealife.com
메리츠종합금융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타 5층 (02-777-7711)
	연혁	- 1977.07.13 : 대한종금주식회사로 설립 - 1977.11.14 : 한불종합금융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1990.11.20 : 홍콩에 현지법인 (Korea Orix Lease & Finance Ltd.)설립 - 1994.09.16 :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

		- 2007.01.09 : 메리츠종합금융으로 상호 변경
	홈페이지	www.imeritzbank.com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 성원빌딩 (1588-9600)
	연혁	- 1989.06.01 : 회사설립 - 1998.03.16 : MetLife International Holdings, Inc. 코오롱그룹 지분 인수, 단독 주주로 변경 - 1998.06.01 :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로 사명 변경 - 2006.03.31 : 7년 연속 흑자 시현(671억)
	홈페이지	www.metlife.co.kr
삼성생명보험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 (1588-3114)
	연혁	- 1957.05.05 : 동방생명 창립 - 1963.07.13 : 삼성그룹 계열사 편입 - 1989.07.01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1998.09.15 : 삼성생명투신운용 설립 - 2002.11.30 : 자산70조 돌파 - 2003.02.14 : 삼성생명 공유가치 선포 - 2003.09.05 : 금감원 주관 민원평가 3년 연속1위(생보부문)
	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
ING생명보험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53 (1588-5005)
	연혁	- 1989 조지아 생명보험 한국지사 설립 - 1991 네덜란드생명보험㈜ 한국현지법인 설립 - 2002 국민은행과 전략적 제휴관계 관련 계약체결 - 2004 론 반 오이엔 대표이사/사장 취임, 업계 4위 진입 - 2007 A.M Best사로부터 7년 연속 신용등급 "A"등급 판정
	홈페이지	www.inglife.co.kr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1588-5656,)
	연혁	- 1955년 3월 : 국내 최초의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창립 (상호 동방해상보험주식회사) - 1962년 12월 : 한국손해재보험공사 흡수합병 - 1985년 10월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2007년 3월 :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설립
	홈페이지	www.hi.co.kr

2.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2. 수익증권 환매업무
  3.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4.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업무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 판매회사의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의 책임
-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매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Ⅲ. 수탁회사

1.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번지 (02-2073-7114)
회사연혁	- 2001.11.01 국민·주택 합병은행 출범 - 2002.08.30 총자산 200조 돌파 - 2002.12.26 제1회 정보보호대상 우수상 수상 (정보통신부) - 2003.09.30 국민카드㈜ 합병

2.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수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 수탁회사의 의무
- 수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수탁회사의 책임
-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Ⅳ. 일반사무관리회사

1.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사연혁	- 2000.06.15 회사 설립 - 2000.06.28 한국투자신탁운용 수익증권 사무수탁대행계약 체결 - 2001.09.16 자체사옥 입주 - 2008.07.30 신한아이타스로 사명변경

2.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Ⅴ. 채권평가회사

1.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유화증권빌딩 9층 (02-3770-0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일빌딩 15층 (02-739-3590)
회사연혁 - 설 립 일 - 등 록 일 - 자 본 금 - 종업원수 - 기 타	 - 2000.5.29 - 2000.7.1 - 50억원 - 43명	 - 2000.6.20 - 2000.7.1 - 30억원 - 35명 -한경-KIS 채권지수 발표 (2001.1.1) -증권업협회-KIS-한경기업어음지수 개발	 - 2000.6.16 - 2000.7.1 - 47.5억 - 39명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실시 (2002.1)

		(2002.7.2)	

2.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자산운용회사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신탁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1.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 내역서

4.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itmc.com) 또는 자산운용협회 인터넷홈페이지(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공시

1.정기공시 및 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하나,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 신탁약관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서류

-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수탁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kitmc.com),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은 제외함)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2) 의결권 행사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자산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하여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 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별첨]

한국투자네비게이터주식투자신탁1호classA(04813)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6. 수탁고 추이(순자산가치 기준)

[단위:억원, %]

연 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2년전	2년6개월전	3년전
	08.11.07	08.05.07	07.11.07	07.05.07	06.11.07	06.05.07	05.11.07
수탁고	5,371	7,131	3,873	398	682	764	
증가율*	-24.68	84.14	872.97	-41.64	-10.72		

*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Ⅱ. 투자정보

7. 투자실적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기 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07.11.08 ~08.11.07	06.11.08 ~08.11.07			05.12.20 ~08.11.07
투자신탁	-44.73	0.07			-0.17
비교지수*	-40.43	-7.81			-4.22

* 비교지수: [(KOSPI × 90%) + (CD금리 × 10%)]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 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07.11.08 ~08.11.07	06.11.08 ~07.11.07	05.12.20 ~06.11.07		
투자신탁 1)	-44.73	81.18	-0.63		
비교지수 2)	-40.43	42.67	3.77		

주1) 마지막 측정대상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기간수익율임.

주2) 비교지수 : [(KOSPI × 90%) + (CD금리 × 10%)]

※ 연평균수익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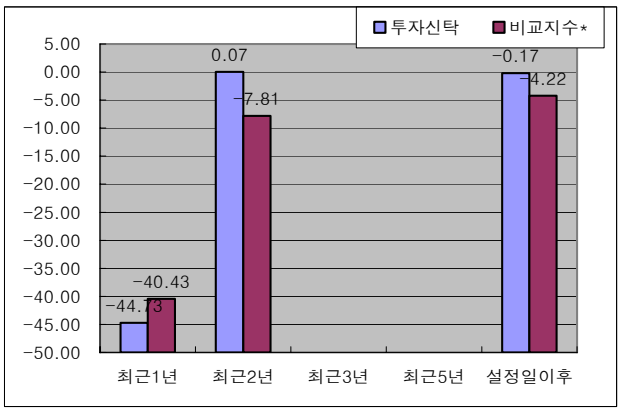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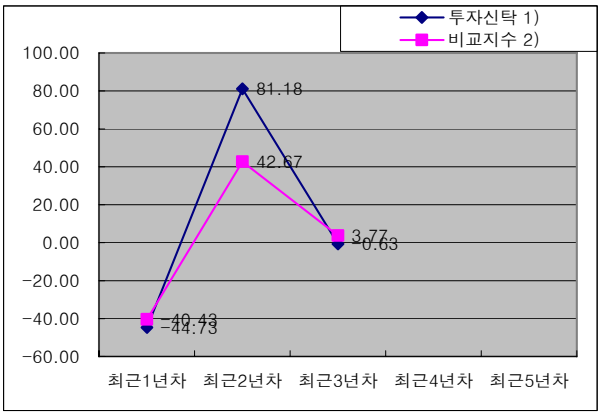

[별첨]

한국투자네비게이터주식투자신탁1호(종류C)(40019)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6. 수탁고 추이(순자산가치 기준)

[단위:억원, %]

연 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2년전	2년6개월전	3년전
	08.11.07	08.05.07	07.11.07	07.05.07	06.11.07	06.05.07	05.11.07
수탁고	954	1,446	849				
증가율*	-34.04	70.27					

*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Ⅱ. 투자정보

7. 투자실적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기 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07.11.08 ~08.11.07				07.05.29 ~08.11.07
투자신탁	-45.13				-15.77
비교지수*	-40.43				-19.54

* 비교지수: [(KOSPI × 90%) + (CD금리 × 10%)]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 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07.11.08 ~08.11.07	07.05.29 ~07.11.07			
투자신탁 1)	-45.13				
비교지수 2)	-40.43				

주1)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음.

주2) 비교지수 : [(KOSPI × 90%) + (CD금리 × 10%)]

※ 연평균수익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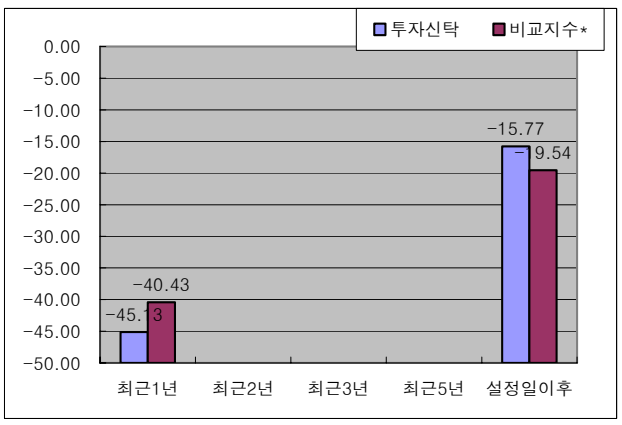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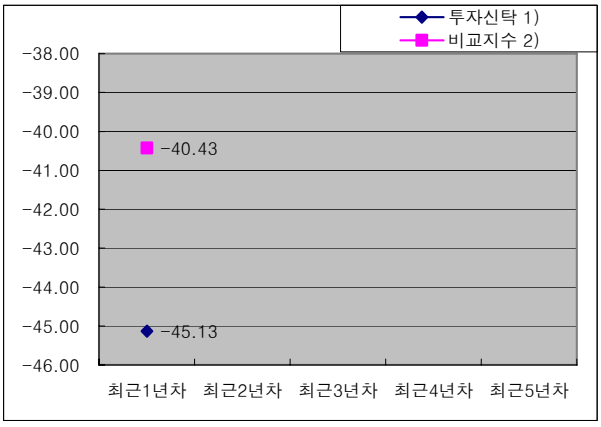

[별첨]

한국투자네비게이터주식투자신탁1호(C-e)(03Y10)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6. 수탁고 추이(순자산가치 기준)

[단위:억원, %]

연 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2년전	2년6개월전	3년전
	08.11.07	08.05.07	07.11.07	07.05.07	06.11.07	06.05.07	05.11.07
수탁고	19	23	1				
증가율*	-16.33	4,255.82					

*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Ⅱ. 투자정보

7. 투자실적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기 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07.11.08 ~08.11.07				07.10.26 ~08.11.07
투자신탁	-44.90				-40.08
비교지수*	-34.60				-32.43

* 비교지수: [(KOSPI × 90%) + (CD금리 × 10%)]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 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07.11.08 ~08.11.07	07.10.26 ~07.11.07			
투자신탁 1)	-44.90				
비교지수 2)	-34.60				

주1)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음.

주2) 비교지수 : [(KOSPI × 90%) + (CD금리 × 10%)]

※ 연평균수익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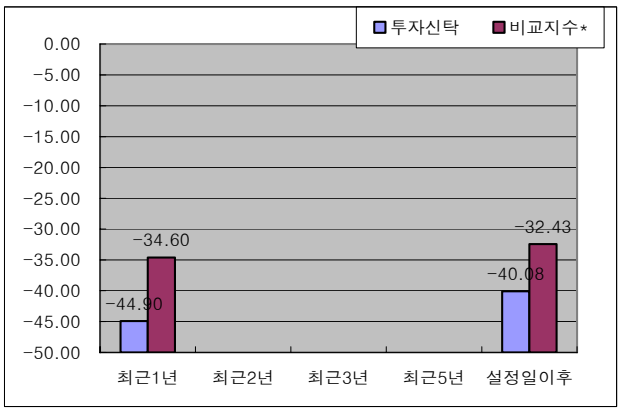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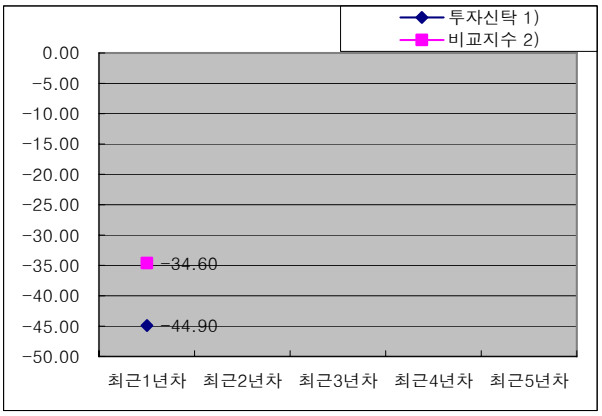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투자신탁명칭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주식투자신탁 1호**

□ 판 매 일 : _____

□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